

2020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

경기도 내 첨단기술 기반 수면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『2020년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』을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2월 27일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위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소재 및 기술을 접목한 수면관련 신제품(슬립테크) 개발 수요 및 시장 확대
- 수면산업 분야 R&D(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), R&BD(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)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 도모

□ 지원규모 : 4억 원 (25개 과제 내외 선정)

□ 지원내용 (요약)

구 분	지원 사업 세부 내용
R&D (기술혁신·신제품개발)	- 신제품 개발·첨단기술 융합 : <u>최대25백만원 이내</u>
R&BD (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)	- 제품 검사·시험분석·인증(기능, 성능, 환경 등) - 판로 개척(수출 가망 거래처 발굴 및 분석, IR·홍보 등) -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, 디자인 개발 등 ※ <u>최대10백만원 한도 내</u> 기업 자율 수요중심 Package 지원

□ 지원절차

지원 단계	세 부 내 용	R&D	R&BD
사업신청 및 적격검토	· 사업신청 및 서류 적격성,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(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및 제재사항 조회 등)	○	○
▼			
현장실태조사	·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(현물·보유 제품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)	○	○
▼			
선정 평가(발표)	·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의 혁신성· 차별성, 사업화 가능성, 사업내용의 적합성, 목표달성 가능성,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※ 접수 규모에 따라 생략 및 변경될 수 있음	○	△
▼			
원가분석	· 원가분석(해당시) 및 예산조정 후 결과통보	X	○
▼			
과제 선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	·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(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)	○	○
▼			
협약체결	· 과제 승인 및 협약	○	○
▼			
사업비 지급	·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	○	X
▼			
과제수행	· 진도점검 : 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(필요시) · 최종점검 : 개발완성도 및 과제 추진실적(성과) 현장조사	○	○
▼			
최종 평가(발표)	·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 심사 및 평가	○	X
▼			
사업완료	·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	○	X
▼			
도 지원금 신청 및 사업완료	· 과제종료시 :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도 지원금 교부 신청	X	○
▼			
사업비 지급	· 정산완료시 : 도 지원금 지급 및 사후 성과관리	X	○
▼			
사후관리	· 사후 성과관리	○	○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.

2. 지원금액 및 기간 · 사업비

□ 지원개요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소재한 수면산업 관련 중소기업

※ 자세한 사항은 “3. 신청자격” 및 “5. 지원제한” 확인

○ 지원내용 및 규모

지원분야	세부사업	지원내용 (예시)	과제당 도지원금 (백만원)	총 지원 규모	비고
R&D (기술혁신· 신제품개발)	신제품 개발· 첨단기술 융합	· 수면관련 신제품 개발 · 기존 수면관련 제품에 신기술 융합(생체인식센서, 빅데이터, IoT, 머신러닝, 모바일 기술 등) 등	25	8개사 내외	-
R&BD (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)	제품검사·시험분석 · 인증 등	· 수면관련 보유 제품의 기능, 성능, 환경(유해성 등)에 관한 검사·시험분석·인증·컨설팅 등	10	17개사 내외	※기업자율 수요중심 Package 지원
	판로개척	· 해외 수출 가망 거래처 발굴 및 분석 · 제품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물(또는 IR 등) 제작 등			
	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	·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, 등록 및 기술보호 임치 수수료 등			
	디자인 개발	· 제품·시각·포장 디자인 개발 등			

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. 11. 30. 이내(약 8개월)

□ 기업부담금 : 총 사업비의 30%(현금+현물, 또는 현금) 이상을 부담

[참고 1] 사업비 계상 예시

구분	도 지원금 (70%)	기업부담금(30%)		총 사업비 (합계, 100%)
		현금	현물 (보유기자재, 인건비 등)	
계산식	도 지원금≤(총 사업비×0.7)	현금≥(총사업비×0.1~0.3)	총 사업비-(도지원금+기업부담현금)	-
R&D	25,000,000원 이내	3,572,000원 이상	7,143,000원 이상	약 35,715,000원
R&BD	10,000,000원 이내	4,285,800원 이상	계상불가	14,285,800원

3. 신청자격

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‘접수마감일 (2020. 3. 20.)’

※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 종료시까지

R&D분야(신제품 개발·신기술 융합)

수행주체		자 격	
주관연구 기관	기업 (단독신청 가능)	접수마감일 (3.20.) 기준 ①~③ 모두 충족	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			②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([참고2] 참조) 설치·운영
			③ 경기도 내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 전담부서’ 설치·운영 ([참고2] 참조)
참여기관	대학 및 연구기관 등	· 경기도 소재 대학(분교 포함) 및 연구기관(분원 포함) ※ 위 ‘실시기업’과 컨소시엄 구성은 가능하나, 대학·연구기관 단독 신청은 불가	

R&BD분야(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)

수행주체		자 격	
기업	접수마감일 (3.20.) 기준 ①~② 모두 충족	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	
		②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([참고2] 참조) 설치·운영	

[참고 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■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‘기업 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0. 3. 2.(월) ~ 2020. 3. 20.(금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전산등록

○ 전산등록처 :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

-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회원가입(필수)

※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

○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

○ 제출방법 : 파일 압축 후 첨부파일로 제출

※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신청서 작성(첨부파일 등록)

○ 구비서류 (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연번	서 식 명	해당 서류	
		필수	해당시
①	[별첨1] 사업계획서 파일 (파일명 : 사업계획서_기업명/ 확장자 : hwp)	○	
②	[별첨2] 개인정보 이용 제공·조회 동의서 (날인 스캔본)	○	
③	[별첨2]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종 수혜 금지 서약서 (날인 스캔본)	○	
④	사업자등록증명 1부 (스캔파일)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※ 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공고일(2020.2.27.) 이후 발급분 제출	○	
⑤	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1부 (스캔파일)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(www.rnd.or.kr)에서 공고일(2020.2.27.) 이후 발급분 제출	○	
⑥	법인등기부등본 1부 ※공고일(2020.2.27.) 이후 발급분		○
⑦	공장등록증 사본 1부 ※공고일(2020.2.27.) 이후 발급분		○
⑧	2018년도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※ '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세무사 확인본)' 원본 제출		○
⑨	2019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※ 정부24 발급분		○
⑩	가산점 적용 증빙 서류(예: 면접수당 계좌이체증 또는 수령확인서)		○

※ '해당시 제출'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임의 누락했을 경우, 추가 요청할 수 있음.

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
○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 (<http://pms.gbsa.or.kr>)

○ 경기도청 홈페이지 『고시·공고』 (<http://www.gg.go.kr/>)

○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 포털 『이지비즈』 (<http://www.egbiz.or.kr/>)

※ 초기화면 상단 검색창에 “수면”으로 검색 후, ‘경기도 지원사업 검색결과’ 확인

5. 지원제한

※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,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

- 접수 마감일(20.3.20.) 기준,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① 동일 기업이 이번 사업에 복수의 R&D과제를 접수하는 경우
 - ②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때
 - ③ 신청과제가 해당사업(분야)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 - ④ 이미 개발·이미 지원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
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, 유관기관 사업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
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
- ※ 단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전제로 지원 가능
- ⑤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, 국세·지방세 납부 등)을 불이행하는 경우
 - ※ 국세·지방세 납부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추가 제출
 - ⑥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 - R&D분야의 경우, 道 지원결정금액 전액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하며, 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 등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⑧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 - ⑨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
6. 평가기준

□ 적격심사

- 서류검토 :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, 과제 중복성, 제재사항 등
- 현장조사(필요시) : 기술개발 인프라,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

□ 발표평가

-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- 평가항목 :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, 사업화 가능성, 사업내용의 적합성, 목표달성 가능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

※ 접수 규모에 따라 생략 및 변경될 수 있음

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과제선정 취소(후순위 과제 선정)

[참고4]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

- 가산점 적용대상

- ① 1.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

• 경기도 내 '면접수당 지급 기업'이 주관하는 과제

- 가산점 적용기준

-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※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
 -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
- ※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

7. 기타 공지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업, 대표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
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-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

목표 등에 대한 공시

-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제과학진흥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 (R&D분야에 한함)

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

※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,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은 제외

- 발급수수료는 사업비(현금)로 계상

□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

□ 과제선정 취소

-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
 -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 -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
 -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접수 마감일 이후, 사전지원제외(신청자격 상실)에 해당하는 경우

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
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(경기도 고시)」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(세부)지침」
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(세부)지침」

8. 문의처

기 관 명	연락처	F.A.X.	E-mail.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	031) 776-4854, 776-4857	031) 776-4825	rnd@gsa.or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
별 첨 :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식

부록(참고) : 1. 수면산업의 정의 및 범위 · 분류(예시)
2.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
3. 각 분야별 세부 지원 항목(예시)
4.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(예시). 끝.